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광진구” 라 한다)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사업)**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·출산·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
2.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·의료 지원
3.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
4.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

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아동의 보호조치)** 구청장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예산의 확보)**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)**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홍보)**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표창)**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, 법인,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」에

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

##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**미첨부 사유서**

### 1. 비용발생 원인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해당

#### 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

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 4. 작성자 :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김홍미(02-450-7124)



**법규명****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기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(이하 “위기임부”라 한다)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(이하 “위기산부”라 한다)으로서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.
2. “상담기관”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.
3. “비식별화”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보호출산”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출생증서”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·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.
6. “보호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민법」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

나.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「민법」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신부를 보호하는 사람

다.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·양육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·양육하는 가정 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

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아동의 보호조치)**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

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.